

I

수입제도 변경사항

1. 검역 일반

- 식품오염물 한도 新기준 6월 1일부터 시행
 - 새롭게 개정된 <GB2762-2012식품 중 오염물한도> 기준이 '13. 6. 1부터 시행
 - 본 기준은 식품 중 납(Pb), 카드뮴(Cd), 수은(Hg), 비소(As), 주석(Sn), 니켈(Ni), 아질산염, 질산염, 벤조피렌, N-니트로소디메틸아민, 염화페비닐, 클로로프로판디올 등의 한도기준을 규정
 - <GB2762-2012식품 중 오염물한도>는 기존 <GB2762-2005식품 중 오염물한도> 규정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, 기존항목은 원 GB2762-2005 기준대로 이행하며, 기존 <GB2715-2005양식위생기준>의 일부 중금속 기준도 신규 GB2762-2012에 따름
- GB2762-2012는 GB2762-2005 중 아래의 내용이 변경되었음
 1. 기준명칭을 수정
 2. 식용 가능 부분의 정의를 추가
 3. 응용원칙을 추가
 4. 셀레늄, 알루미늄(Al), 불소(F)의 함량한도 규정을 삭제
 5. 주석(Sn), 니켈(Ni), 클로로프로판디올 및 질산염의 한도 규정을 추가
 6. N-니트로소디메틸아민의 중문명칭 N-亞硝酸을 N-二甲基亞硝酸으로 변경
- 新기준은 수산물 중 쌍각류의 중금속 카드뮴 함량 한도를 0.2mg/kg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는데, 기존어류의 카드뮴 한도는 0.1mg/kg이었음
- 新기준은 기존 식품의 모든 오염물 한도 규정을 정리하였는데 납(Pb), 카드뮴(Cd), 수은(Hg), 비소(As), 벤조피렌, N-니트로소디메틸아민 등 13가지 오염물의 곡물, 과일, 육류, 수산물, 조미료, 음료, 술 등 20대 식품 품목에서의 한도를 규정하였음
- 셀레늄, 알루미늄(Al), 불소(F)를 삭제하였고, 160여개 항목을 개정하였음. 최근 중국 호남, 호북성에서 생산한 쌀에서 카드뮴이 발견되어 카드뮴 쌀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, 新기준에 따르면 식품 중 카드뮴 함유량 한도는 0.2mg/Kg임(국제기준 : 0.4mg/Kg)

< 현재 쌀의 중금속 함유량 한도는 아래와 같음 >

기준명칭	납(Pb)	카드뮴(Cd)	수은(Hg)	비소(As)	크롬(Cr)	비고
GB2762-2012 식품중오염물한도	≤0.2	≤0.2	≤0.02	≤0.2	≤1.0	2013. 6. 1 실시

II

수입제도 현안

1. 검역 불합격, 폐기, 반송 사례

☐ 주요내용

- 2013년 4월 중국 수입 한국산 불합격 리스트

HS코드	제품명	제조상	수입상	물량(Kg)	불합격 원인	처리
0307490000	조미오징어	H*	靑*	1,000	필요한 증서 제공하지 못함	반품
0511911990	조미 대구	H*	靑*	1,000	필요한 증서 제공하지 못함	반품
1605909090	조미꿀뚜기	H*	靑*	1,000	필요한 증서 제공하지 못함	반품
1901100000	조제분유(750g)	L*	上*	3,105	비타민 B12, 콜린, B6 함량 국가기준 미달	반품
1901100000	조제분유(14g/백)	L*	上*	1,400	비타민 B6 함량 국가기준 미달	반품
1902303000	김치국수	O*	北*	48	대장균 기준치 초과	소각
2106909090	고구마제품	O*	靑*	980	유통기한 초과	소각
2201101000	생수	J*	日*	94,848	균락총수 기준치 초과	반품
2201101000	생수	S*	日*	11,520	균락총수 기준치 초과	반품

자료원 : 중국질검총국

○ 불합격제품이 주로 우유 및 조제분유 등이며, 주요 불합격 사유는 유통기한 초과, 셀레늄 함량 국가기준 미달 및 황색포도상구균(식중독 유발) 검출임

○ 3~4월 중국 수입한국산 불합격 제품은 주로 산동항구, 일부는 상하이, 북경 등 항구를 통하여 수입한 것으로 불합격 제품은 소각 혹은 반품 처리

☐ 시사점 / 대처방향

- 금번 새롭게 시행되는 식품오염물 한도 기준에 맞게 식품이 생산, 수출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에 전파·홍보
- 또한 중국정부 및 중국소비자는 분유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신규 <수출입유제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>이 이미 5월 1일부터 실시되었음
- 유아용품에 민감한 중국 소비자들의 특성을 차치하더라도 일부 업체의 품질 문제는 전체 한국 유제품 수출의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

할 뿐 아니라 금번 신규 시행되는 유제품 관리방법을 잘 숙지하여 규정에 맞게 수출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

< 수출입유제품 검사검역감독 관리방법 주요내용 >

- **유제품 수출 국외생산기업의 등록정책 실시**
 -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외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등록정책 실시추진
 - 국가질검총국에서 등록에 관한 규정을 공포할 예정
 - 생산기업에 일정한 과도기를 주어 등록작업 완료 예정
- **최초수입 유제품의 정의 및 조치사항 발표**
 - 방법이 실시되는 날부터 국외에서 출발하여 운송되는 유제품이 某항구로 처음 수입될 경우 첫 수입으로 간주
 - 검역신청 시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열거한 항목의 검측보고서 제출
- **검측보고서 제공가능 검역기구 명확화**
 - 외국 검측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검측기구는 국외 정부실험실, 제3자 검측 기구나 기업실험실, 또는 경내 식품검역기구 자격인정을 받은 검측기구
- **검역심사비준 수속처리가 필요한 수입유제품 종류발표**
 - 생유 : 0401200000
 - 생유제품 : 0403100000, 0406100000, 0406200000, 0406300000, 0406400000, 0406900000
 - 파스퇴르 살균유 : 0401100000, 0401200000